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민병덕·전현희·황명선
김문수·오세희·임오경
박홍배·전용기·신장식
진성준·이수진·김남근
양부남·정진욱·추미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증오·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2항·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u>까지</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